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1339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배지영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승주, 우충사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피고 C와 E(F생)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04.196/1347.9 지분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04.196/1347.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6. 14. 접수 제63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6. 11. 접수 제615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는 2001. 9. 27. G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G는 2002.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5697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0.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3,31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E, H과 피고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의 모인 망 I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04.196/449.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 31. 사망하였다.

2) 망 I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E, H, 피고 C가 있었는데, E, H,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 C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6. 11.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2.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매매

피고 C는 2019. 6.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9.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I의 사망일인 2002. 1. 31.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11.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2.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2002.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은 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E, H,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 C의 단독 상속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일자 2019. 5. 17.인 점, 피고 D은 망 I의 사망 당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었고, 다만 등기신청을 위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9. 5. 17.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 I의 사망 당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처분문서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재와 같이 2019. 5. 17.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5. 17.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2.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I의 사망일인 2002. 1. 31.이 아니라, 2019. 5. 17.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주장 중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I의 사망일인 2002. 1. 31.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3,31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E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며, E의 형제인 피고 C 및 E의 전처인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02. 1. 11. E와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들이 2002. 2. 15.자 매매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각서에는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며(단, 대출금 4억 1,0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임) 등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이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협의이혼 이후 E가 2001. 12. 21.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4.196/449.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019. 5. 17.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 D은 2019. 5. 22. 피고 C의 의료보험비 11,995,062원을 대납해주었으며, 피고 C는 2019. 6.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9.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피고 D이 위 매매각서에 따라 피고 C에게 9,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3억 원을 피고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E의 상속지분인 1/3 지분, 즉 이 사건 토지 중 304.196/1347.9 지분(= 망 I의 304.196/449.3 지분 ×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4.196/1347.9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D은, 자신이 J,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4.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9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D의 형부인 J이 2004. 4. 22.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0원 중 150,698,794원을, 피고 D의 오빠인 K이 2004. 4. 23.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10,000,000원 중

261,257,830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K 및 J의 위 대위변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5. 17.로부터 약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04.196/1347.9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별지

목 록

1. 안양시 만안구 M 대 449.3㎡

2. 안양시 만안구 M

[도로명 주소] 안양시 만안구 N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내지 3층 각 256.96㎡

지층 256.96㎡

끝.

